

96.4

고 발 장

고 발 인 김 정 자

임 현 택

이 대 훈

피 고 발 인 김 석 원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김 정 자 대표 고발인

주소 :

전화번호 :

임 현 택

주소 :

전화번호 :

이 대 훈

주소 :

전화번호 :

(이상 연락처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참여연대))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번호 : 796-8364

전송 : 793-4745

피 고 발 인 김 석 원

주소 :

전화번호 :

고발인은 위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오니 엄정히 조사하시어 의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고발인들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소속 회원들로서 다음에 자세히 적시한 범죄를 보도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그럼에도 추상같이 정의를 세워야 할 수사기관이 이 중대한 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着手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의문을 느껴 다음과 같이 고발하는 바입니다.
2. 피고발인은 쌍용양회(주)등 다수의 회사로 이루어진 쌍용그룹의 전임 총수입니다. 피고발인은 위 쌍용그룹의 다수 회사들을 경영하여 오던 중 정치진출을 위하여 회장직을 사퇴하고 1995.부터 정계에 입문하여 1996. 4. 11. 있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구 달성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입니다.
2. 피고발인은 과거 5, 6공 시절 쌍용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대통령으로 재직중이던 고발의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그룹을 잘 보아달라는 취지로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권력에의 영합도 불사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3. 피고발인은 위 전두환, 노태우 등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이들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전두환이 대통령 재직중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로 조성된 비자금을 불법설명전환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즉 피고발인은 1993. 11.경 골프장에서 위 전두환을 만난 자리에서 동인으로부터 “곧 만기가 돌아오는 1억원 짜리 산업금융채권 88장을 설명전환하여 현금

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쌍용그룹측에 이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받고 쌍용그룹측은 위 전두환의 비서관인 고발외 [redacted]으로부터 산업금융채권을 넘겨받은 뒤 남양사등 12개 하도급업체 대표들의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하도급업체의 대표들은 그 후 약 3개월간 무기명 채권인 위 각 채권이 자기의 것인 양 실명전환을 하였습니다.

4. 피고발인은 위 산업금융채권(5년만기 1억원짜리) 88장의 원금과 이자 금 143 억 5,000여만원을 위와 같이 불법 실명전환하여 현금으로 바꾼 다음 이 돈을 차명으로 넣어두고 계속 관리하여 오면서 위 전두환이 요구해온 때마다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 11. 위 노태우에 대한 비자금사건이 터지자 나머지 돈을 모두 인출하여 [redacted]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해왔고, 검찰이 1996. 1. 쌍용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이 돈을 서울 종구 저동에 있는 쌍용양회(주)의 경리부 창고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후 위 돈은 검찰에 의하여 압수되었습니다.
5. 피고발인이 위와 같이 고발외 전두환의 비자금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쌍용 그룹의 하도급업체 대표명의를 빌려 불법 실명전환하여 준 것은 위계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잘못을 엄히 밝히어 의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평범한 시민들에 불과한 고발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으며, 돈이 많은 피고발인과 같은 사회지도층이 예외없이

처단된다는 교훈을 우리 사회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더구나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은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돈에 다름아닙니다. 그 부정한 등을 실명화시킴으로써 국민을 배반하고 자신의 손을 더럽게 만든 피고발인은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와 정의에 대한 갈망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1996. 4. 20.

위 고발인 김정자 (인)

임현택 (인)

이대훈 (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